무선설비규칙

[시행 2022.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 1. 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 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22. 1. 4.>

- 1. "발사"(發射)란 송신설비가 전파를 공간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2. "지정주파수"란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마다의 중심주파수를 말한다.
- 3. "특성주파수"란 송신설비에서 발사된 전파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 4. "기준주파수"란 지정주파수에 대하여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주파수가 지정 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변위는 특성주파수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심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변위와 동일한 절대치와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 5. "주파수 허용편차"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심주파수와 지정주파수 사이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편차 또는 발사의 특성주파수와 기준주파수 사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편차를 말하며 백만분율 또는 헤르츠 (이하 "Hz"로 한다)로 표시한다.
- 6. "점유주파수대역폭"이란 변조의 결과로 생기는 주파수대역폭의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한주파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이 각각 0.5퍼센트와 같은 주파수대역폭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한주파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비율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7. "필요주파수대역폭"이란 주어진 발사종별의 전파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통신방식에 필요한 전송 속도와 품질로 정보를 전송하는데 충분한 주파수대역폭을 말한다.
- 8. "대역외발사"(帶域外發射)란 변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주파수대역폭의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 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스퓨리어스 발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9. "스퓨리어스 발사"(Spurious 發射)란 필요주파수대역폭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 (대역외발사는 제외한다)로서 정보전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강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조파발사, 기생발사, 상호변조 및 주파수 변환 등에 의한 발사를 포함한 발사를 말한다.
- 10. "불요발사"(不要發射)란 대역외발사 및 스퓨리어스 발사를 말한다.
- 11. "대역외영역"이란 필요주파수대역폭 바로 바깥쪽의 주파수 범위로서 대역외발사가 우세한 영역을 말한다.
- 12. "스퓨리어스 영역"이란 대역외영역 바깥의 주파수 범위로서 스퓨리어스 발사가 우세한 영역을 말한다.
- 13. "규격전력"이란 송신장치 종단증폭기의 정격출력을 말한다.
- 14. "라디오 부표"란 부표 등에 탑재되어 위치 또는 기상 관련 자료 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신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 15. "급전선"(給電線)이란 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이 경우 "수신장치"란 전파를 받는 장치와 이에 부가하는 장치로서 수신안테나와 급전선을 제외한 장치를 말한다.
- 16. "첨두포락선전력"이란 정상동작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서 변조 포락선의 첨두에서 무선주파수 1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말하며 PX로 표시한다.
- 17. "평균전력"이란 정상동작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 변조에 사용되는 최저주파수의 1주기와 비교하여 충분히 긴 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말하며 PY로 표시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18. "반송파전력"이란 무변조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 무선주파수의 1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말하며 PZ로 표시한다.
- 19. "안테나이득"이란 주어진 방향의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전계 또는 전력밀도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안테나와 손실이 없는 기준안테나의 입력단에서 각각 필요로 하는 전력의 비를 말한다. 이 경우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최대복사방향에서의 이득을 통상 데시벨로 표시한다.
- 20. "등가등방복사전력"이란 안테나에 공급되는 전력과 등방성(等方性) 안테나에 대한 임의의 방향에서의 안테나이 득(절대이득 또는 등방이득)의 곱을 말한다.
- 21. "반송파"란 신호파를 무선으로 운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주파수를 말한다.
- 22. "정격전압"이란 무선설비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데 필요한 표준 상태의 전압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표준방식

- 제3조(아날로그 방송) 아날로그 중파방송 및 초단파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 1. 변조방식
 - 2. 변조주파수
- **제4조(디지털 방송)**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디지털 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 1. 변조 및 전송방식
 - 2. 압축방식
 - 가. 영상신호
 - 나. 음성신호
 - 3. 오류정정부호 등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

제3장 무선설비 기술기준

- 제5조(주파수 허용편차)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주파수 허용편차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주파수 허용편차를 적용한다.
- 제6조(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적용한다.
- 제7조(협대역·광대역 시스템의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 무선설비의 협대역·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한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를 적용한다

.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9조(안테나공급전력 등) ① 전파형식별 안테나공급전력의 표시와 환산비는 별표 5와 같고, 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송신설비의 전력은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신설비의 전력은 규격전력으로 표시한다.<개정 2017. 7. 26., 2022. 1. 4.>
 - 1. 500메가헤르츠(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설비로서 정격출력 1와트(W)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
 - 2. 생존정(生存艇)에 사용되는 비상용 무선설비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라디오 부표의 송신설비 및 항공이 동업무 또는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송신설비는 제외한다)
 - 3. 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송신설비(방송을 하는 실험국의 송신설비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첨두포락선전력, 평균전력 또는 반송파전력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송신설비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송신설비의 전력에 대하여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전력 외에 등가등방복사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 제10조(변조특성 등) ① 변조신호에 따라 송신장치가 반송파를 진폭변조할 때에는 변조도가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반송파를 주파수변조할 때에는 최대주파수편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무선설비는 최고 통신속도 또는 최고 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제11조(안테나계) 안테나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안테나는 무선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최소 안테나이득을 가질 것
 - 2. 정합(整合)은 신호의 반사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 3. 지향성은 복사전력이 목표하는 방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안정적일 것
- 제12조(수신설비) ① 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는 수신안테나와 전기적 상수(常數)가 같은 시험용 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54데시벨밀리와트(dBmW)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전파의 세기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수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수신주파수는 운용범위 이내일 것
 - 2. 선택도가 클 것
 - 3. 내부잡음이 적을 것
 - 4. 감도는 낮은 신호입력에서도 양호할 것
- 제13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① 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W)를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원회로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은 선택호출장치 또는 식별장치 등의 특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 7. 26.>
- **제14조(전원)** ① 무선설비의 운용을 위한 전원은 전압변동률이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0퍼센트 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②「선박안전법」,「어선법」또는「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항공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항행 중 해당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작동시킬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예비전원용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을 것
- ③ 비상국의 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수동 발전기, 원동 발전기, 무정전 전원설비 또는 축전지로서 24시간 이상 상시 운용할 수 있을 것
- 2. 즉각 최대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 제15조(무선설비의 작동 기준) ① 무선설비는 전원이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에서 저전압에 따라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을 가진 무선설비는 저전압에 따라 무선설비의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전압과 해당 무선설비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최고 전압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무선설비는 사용상태에서 통상 접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 등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수 있어야 한다.
 - ③ 무선설비는 외부의 기계적 잡음 등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16조(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①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주 전원설비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원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의무선박국은 송신장치의 모든 전력으로 시험할 수 있는 시험용안테나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의무선박국은 해당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제어하는 장치를 충분히 밝게 비출 수 있는 비상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등의 전원은 해당 무선설비를 통상 밝게 비추는 데 사용되는 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 ④ 의무항공기국의 예비전원은 해당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무선설비를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

- 제17조(무선설비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에 전원의 공급을 위하여 고압전기(600볼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및 교류전압과 75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나 고압전기가 인입되는 변압기, 정류기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들은 외부에서 쉽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 안에 있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송신설비의 단위장치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고압전기를 통하는 것은 견고한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 안에 있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송신설비의 조정판 또는 케이스로부터 노출된 전선이 고압전기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이 절연되어 있을 때에도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송신설비의 안테나·급전선 등 고압전기가 통과하는 장치는 사람이 보행하거나 생활하는 평면으로부터 2.5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2.5m 미만의 높이의 부분이 인체에 쉽게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 2. 이동국으로서 해당 이동체의 구조상 안테나·급전선 등 고압전기가 통과하는 장치를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의 높이에 설치하기 어렵고 무선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 제18조(안테나 등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의 안테나계는 낙뢰로부터 무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낙뢰보호장치 (피뢰침은 제외한다) 및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 무선설비, 육상이동국, 간이무선국의 안테나계 및 실내에 설치되는 안테나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무선설비의 안테나는 안테나설치대의 움직임에 따라 절단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접지시설과 관련한 사항은「산업표준화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및「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참조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장 보칙

-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 ①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한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 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 등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 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 3.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 4.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 5.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 6.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 7.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 제20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부칙 <제78호,2016.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②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후단,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의 전력의 표시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부터40 까지 생략

부칙 <제63호,2020.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1.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 2.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전파법」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검사를 시작하여 이 영 시행 당시에도 진행 중인 경우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3.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전파법」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선설비의 재검사를 시작하여 이 영 시행 당시에도 진행 중인 경우

부칙 <제86호,2022. 1. 4.>(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파수 허용편차(제5조제1항 본문 관련)

		허용편차
주파수대		(Hz를 붙인 것을
	무선국 및 무선설비	제외하고는
		백만분율)
	1. 고정국	7662/
	가. 9kbz 초과 50kbz 이하의 무선설비	100
	나. 50kHz 초과 535kHz 이하의 무선설비	50
	2. 해안국	100 1),2)
	3. 항공국	100
9㎞ 초과	4. 선박국	200 2),3)
535㎞ 이하	5. 선박의 비상 송신설비	500 4)
	6. 구명부기국	500
	7. 항공기국	100
	8. 무선측위국	100
	9. 표준주파수국	0.005
5051H 2 -1	10. 방송국	10Hz
535㎞ 초과	3.3	
1,606.5kHz	방송국	10Hz
이하		
	1. 고정국 및 육상국	1) 2) 5) 6) 7) 9)
	가.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100 1),2),5),6),7),8)
	나. 2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50 1),2),5),6),7),8)
	2. 선박국	40Hz ^{2),3),9)}
1606.5kHz	3. 육상이동국	50 10)
초과	4. 항공기국 5. 구명부기국	100 8)
4,000kHz	5. 구청구기국 6. 무선측위국	100
이하	0. 구선국기곡 가.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20 11)
	가. 200되트 아이크 구선들다 나. 2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10 11)
	7. 방송국	10Hz ¹²⁾
	8. 표준주파수국	0.005
	9. 아마추어국	500
	1. 고정국	
	가. 단측파대 및 독립측파대 발사	
	1)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50Hz
	2) 5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20Hz
	나. 전파형식 F1B의 발사	10Hz
4MI_ = =1	다. 그 밖의 전파형식의 발사	
4Mb 초과 29.7Mb	1)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20
29.7MbZ 이하	2) 5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10
9101	2. 육상국	
	가. 해안국	20Hz ^{1),2),13)}
	나. 항공국 및 그 밖의 무선국	
	1)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100 5),8)
	2) 50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50 5),8)

	다. 기지국	20 5)
	3. 이동국 가. 구명부기국	50
	나. 선박국 1) 전파형식 A1A의 발사 2) 그 밖의 전파형식 발사 다. 항공기국	10 50Hz ^{2),3),14)} 100 ⁸⁾
	라. 그 밖의 무선국 4. 방송국 5. 표준주파수국	40 ¹⁵⁾ 10Hz ¹²⁾ 0.005
	5. 요한 1 의 1 의 6. 아마추어국 7. 간이무선국	500
	8. 라디오 부표국	50
	9. 우주국 10. 지구국	20 20
	1. 고정국 가.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30
	나. 5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2. 육상국	20 20 20 16)
	3. 이동국 4. 무선측위국	20 ¹⁶⁾ 50
29.7Mb 초과	5. 방송국 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	1
100째 이하	나. 그 밖의 방송국 6. 표준주파수국	2,000Hz ¹⁷⁾ 0.005
	7. 아마추어국 8. 간이무선국	500 50
	9. 우주국 10. 지구국	20 20
	1. 고정국 가. 138Mb 초과 174Mb 이하의 무선설비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8 6
	나. 335.4Mb 초과 470Mb 이하의 무선설비	4 18),19)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3 18),19)
	다. 그 밖의 주파수의 무선설비 1)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20 18)
	2) 5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2. 해안국	10 10
	3. 항공국 4. 기지국	20 20)
	가. 100Mb 초과 138Mb 이하의 무선설비 나. 138Mb 초과 174Mb 이하의 무선설비	15 21)
100Mb 초과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8
470배 이하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다. 174mb 초과 235mb 이하의 무선설비	6 15 ²¹⁾
	라. 235Mb 초과 335.4Mb 이하의 무선설비 마. 335.4Mb 초과 470Mb 이하의 무선설비	7 21)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4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3
	5. 선박국 및 생존정의 송신설비	10
	가. 156Mb 초과 174Mb 이하의 무선설비 나. 156Mb 이하 또는 174Mb 초과의 무선설	10
). 100mmz 「	50 22)
	6. 항공기국	30 20)
	7. 육상이동국 가. 100Mb 초과 138Mb 이하의 무선설비	15 ²¹⁾
	나. 138Mb 초과 174Mb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8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다. 174Mb 초과 235Mb 이하의 무선설비	15 21)
	라. 235배 초과 335.4배 이하의 무선설비	7 (21),23)
	마. 335.45 초과 4705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4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8. 무선측위국	3 500 ²⁴⁾
	6. 구선득위기 9. 방송국	500
	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	1
	나. 그 밖의 방송국	2,000Hz ¹⁷⁾
	10. 표준주파수국 11. 간이무선국	0.005
	가. 138Mb 초과 174Mb 이하의 무선설비	
	1)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8
	2)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6
	나. 335.4배 초과 470배 이하의 무선설비	4
	 2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2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4 3
	다. 그 밖의 주파수의 무선설비	20
	12. 아마추어국	
	가. 1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1,000
	나. 1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13. 우주국	500 20
	13. 구구국 14. 지구국	20 20
	15. 특정소출력무선국	7^{25}
	1. 고정국	100
	가. 100와트 이하의 것 나. 100와트 초과의 것	100
	- 다. 100와드 조파의 것 - 2. 육상국	50 20
45000	3. 이동국	20
470Mb 초과	4. 무선측위국	500 24)
2,450Mb 이하	5. 아마추어국	500
"105	6. 방송국	1
	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 나. 그 밖의 방송국	1 100
	- 다. 그 뛰의 항중국 - 7. 우주국	20
	8. 지구국	20
2,450MHz	1. 고정국	000
· 초과	가. 100와트 이하의 것 나. 100와트 초과의 것	200 50
	기, 100서는 꼬바러 것	JU

10.5Hz ০) ক	 유상국 이동국 무선측위국 아마추어국 우주국 지구국 	100 100 1,250 ²⁴⁾ 500 50
10.5GHz 초과 40GHz 이하	1. 고정국 2. 무선측위국 3. 방송국 4. 우주국 5. 지구국	300 5,000 ²⁴⁾ 100 100 100

※ 비고

- 1. 표 중 Hz는 전파의 주파수단위로 1초간의 사이클을, 와트 및 킬로와트는 안테나공급전력의 크기와 단위를 말한다.
- 2. 표 중 안테나공급전력은 단측파대 송신설비의 경우에는 첨두포락선전력 (PX)으로, 그 밖의 송신설비의 경우에는 평균전력(PY)으로 한다.
- 3. 동일한 송신장치 및 동일한 주파수를 둘 이상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편차가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주)

- 1) 해안국의 인쇄전신 또는 데이터전송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협대역 위상 편이 방식(PSK: Phase Shift Keying)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 5Hz
 - ※ "위상 편이 방식"이란 데이터 전송 시 전력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신호점 간의 위상차를 동일한 간격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나)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1992년 1월 1일 이전에 설 치된 장치: 15Hz
- 다)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1992년 1월 2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장치): 10Hz
- 2) 선박국 또는 해안국의 디지털선택호출용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0Hz로 한다.
- 3) 선박국의 인쇄전신 또는 데이터전송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협대역 위상 편이 방식(P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 5Hz
 - 나)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1992년 1월 1일 이전에 설 치된 장치): 40Hz
 - 다)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송신설비(1992년 1월 2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장치): 10Hz
- 4) 선박의 비상송신설비가 주설비의 송신설비에 대한 예비 설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비상송신설비에 대하여 선박국의 주파수 허용편차를 적용한다.
- 5) 단측파대 무선전화 송신설비(해안국 및 항공국의 송신설비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20Hz로

한다.

- 6) 주파수 편이 방식(FSK) 운용에 의한 무선전신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0Hz로 한다.
- 7) 해안국의 단측파대 무선전화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 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20Hz로 한다.
- 8) 1,606.5㎞ 초과 4,000㎞ 이하의 대역과 4㎞ 초과 29.7㎞ 이하의 대역을 사용하는 항공이동(R)업무용 단측파대 무선전화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항공국: 10Hz
 - 나) 국제업무를 하는 항공기국: 20Hz
 - 다) 국제업무를 하지 않는 항공기국: 50Hz(가능하면 20Hz)
- 9) A1A의 발사에 대해서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0(10⁻⁶)으로 한다.
- 10) 단측파대무선전화의 송신설비 또는 주파수 편이 방식 운용에 의한 무선전신의 송신설비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40Hz로 한다.
- 11) 1,606.5kb 초과 1,800kb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표지용 송신 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 고 50(10⁻⁶)으로 한다.
- 12) 반송파 전력이 10kW 이하이고 A3E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설비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606.5kb 초과 4.000kb 이하의 무선설비: 20(10⁻⁶)
 - 나) 4Mb 초과 5.95Mb 이하의 무선설비: 15(10⁻⁶)
 - 다) 5.95Mb 초과 29.7Mb 이하의 무선설비: $10(10^{-6})$
- 13) A1A의 발사에 대해서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0(10⁻⁶)으로 한다.
- 14) 연안 또는 근해에서 운항하는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선박국 송신설비로 반송파전력(PZ)이 5와트 이하이고 26,175kb 초과 27,500kb 이하의 주파수대의 F3E와 G3E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40(10^{-6})$ 으로 한다.
- 15) 단측파대 무선전화 송신설비(26,175版 초과 27,500版 이하의 주파수대에서 운용하는 첨두포락선전력(PX)이 15와트 이하인 송신설비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 편차는 이 표에서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0Hz로 한다.
- 16) 이동체에 설치하지 않은 휴대용 장치에서 평균전력(PY) 5와트 이하의 송신 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40(10^{-6})$ 으로 한다.
- 17) 108Mz 이하의 주파수로 운용하는 평균전력(PY) 50와트 이하의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3,000 Hz로 한다.

- 18) 직접 주파수 변환을 사용하는 다단무선중계방식의 무선설비에 대한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30(10^{-6})$ 으로 한다.
- 19) 방송중계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20(10⁻⁶)
 - 나) 50와트 초과의 무선설비: 10(10⁻⁶)
- 20) 채널 간격이 50kHz인 경우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50(10^{-6})$ 으로 한다.
- 21) 채널간격이 20地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22) 선상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 \sum 불구하고 $5(10^{-6})$ 으로 한다.
- 23) 이동체에 설치하지 않은 휴대용 장치로 평균전력(PY) 5와트 이하인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구하고 $15(10^{-6})$ 으로 한다.
- 24) 특정한 주파수가 지정되지 않은 레이다시스템의 경우 해당 시스템이 발사 하는 전파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해당 업무에 분배된 대역 내에서 유지되어 야 한다. 이 경우 규정된 주파수 허용편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 25) 430llb대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이 표에 규정한 값에도 불 구하고 $100(10^{-6})$ 으로 한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제6조제1항 본문 관련)

		점유주파		
전 파				
형식	무선설비	수대역폭 의		
		허용치		
A1A	1. 1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로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	250Hz		
A1B	선설비			
	2. 그 밖의 무선국의 무선설비 1. 75째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표지국의 무선	500Hz		
	1. 15mm 취기의 전의를 들어야는 기원표시작의 기원 설비	6.5kHz		
	2. 400.15Mbz 이상 406Mbz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1 MHz		
	기상원조국의 무선설비	TMIR		
A2A	3. 1,668.45 이상 1,7005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	6MHz		
A2B	하는 기상원조국의 무선설비			
	4.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_		
	1,000Hz를 초과하여 2,200Hz 이하의 변조주파수를 사	5kHz		
	용하는 것 5. 그 밖의 무선국의 무선설비(생존정의 송신장치는 제			
	외한다)	2.5kHz		
	1.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H2A	1,000Hz를 초과하여 2,200Hz 이하의 변조주파수로 사	3kHz		
H2B	용하는 것			
	2. 그 밖의 무선국의 무선설비	1.5kHz		
	1.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공중통신무	8kHz		
	선국의 무선설비			
	2. 방송국과 방송중계(일반 대중에게 직접 수신시키는	10111		
A3E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프로그램 중계를 말한	10kHz		
	다. 이하 같다)를 하는 무선설비 3. 스테레오포닉 방송 ¹⁾ 을 하는 방송국과 방송중계를 하			
	- 는 무선설비	15kHz		
		6kHz		
R3E				
НЗЕ	모든 무선국의 무선설비	3kHz		
Ј3Е				
C3F				
C9F				
F3E				
F8E	E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G3E	G3E			
C2W				
C7W				
	1	1		

G7W		
F1D F1E F7D F7E	29.7 Mbz 이상 50 Mbz 이하, 72 Mbz 이상, 76 Mbz 이하, 138 Mbz 이상 174 Mbz 이하, 216 Mbz 이상 223 Mbz이하, 335.4 Mbz 이상 470 Mb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138 Mbz 이상 174 Mbz 이하, 216 Mbz 이상 223 Mbz이하, 335.4 Mbz 이상 470 Mb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	4kHz 8.5kHz
	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1. 선박국 및 해안국의 무선설비로서 디지털선택호출・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인쇄전신 또는 데이터전송에 사용하는 것	0.5kHz
	2. 1,644.3째 이상 1,646.5째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0.6kHz
F1A	3. 산란파에 따라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	2kHz
F1B F1D G1A G1B G1D	4. 138mk 이상 174mk 이하, 216mk 이상 223mk 이하, 335.4mk 이상 470mk 이하, 457.5mk 이상 467.6mk 이하 (선상통신국만 해당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5. 200mk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특정소출력무선국의 무선설비 6. 406.0mk 이상 406.1mk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8.5kHz 16kHz 20kHz
	7. 그 밖의 무선국의 무선설비	3kHz
F2A F2B F2D F9D F9X	1. 138Mb 이상 174Mb 이하, 216Mb 이상 223Mb이하, 335.4 Mb 이상 470Mb 이하, 457.5Mb 이상 467.6Mb 이하(선상통 신국만 해당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8.5kHz
G2A G2B G2D K2A K2B	2. 29Mbz 이상 50Mbz 이하, 72Mbz 이상 76Mbz 이하, 146Mbz 이상 174Mbz 이하, 335.4Mbz 이상 470Mb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3. 200Mbz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특정소출력무선국의 무선설비	16kHz
	4. 940Mk에서 960Mk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400kHz

6. 1,668.4 lbc 이상 1,700 lbc 이하의 주파수의 진파를 사용하는 기상원조국의 무선설비 7. 그 밖의 무선국의 무선설비 3kbc 이상 123 lbc 이상 50 lbc 이하, 138 lbc 이상 174 lbc 이하, 216 lbc 이상 223 lbc 이하, 138 lbc 이상 174 lbc 이하, 216 lbc 이상 467.6 lbc 이하 (선상통신국만 해당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충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 시계한다) 2. 25.11 lbc 이상 27.5 lbc 이하, 29.7 lbc 이상 50 lbc 이하, 72 lbc 이상 76 lbc 이하, 146 lbc 이상 174 lbc 이하(아마추어국,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만 해당한다), 450 lbc 이상 467.58 lbc 이하 (선상통신국만 해당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주파수의 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 200 lbc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초단과 방송국의 무선설비 5. 174 lbc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5. 174 lbc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6. 1) 방송국 2. 72 lbc 이서 585 lbc 가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7. 942 lbc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7. 942 lbc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7. 942 lbc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무연로 무선적의 무선설비 무단로 무선국의 무선설비 구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 lbc 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 lbc 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 lbc 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 lbc 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업무선전화 무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 lbc 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 lbc 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무단이에 무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무대전화용 무선설비 1,670 lbc 이상 1,690 lbc 이라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무대전화용 무선설비 나타 1,670 lbc 이상 1,690 lbc 이라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용00 lbc 기용 기관을 사용하는 이동가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용00 lbc 기용 기관을 사용하는 이동가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용00 lbc 기용 기관을 사용하는 이용		5. 400.15째 이상 406째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상원조국의 무선설비	1 MHz
7. 그 밖의 무선국의 무선설비 1. 29.7배 이상 50배 이하, 138배 이상 174배 이하, 216 배는 이상 223배는이하, 335.4배는 이상 470배는 이하, 457.5배는 이상 467.6배는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한다)의 주파수의 전과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절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2. 25.11號 이상 27.5배는 이하, 29.7배는 이상 50배는 이하, 72배는 이상 76배는 이하, 146배는 이상 174배는 이하(아마추어국,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만 해당한다), 450 배는 이상 467.58배는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한다), 450 배는 이상 467.58배는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하며 방송 중계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주파수의 전과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절비 3. 200배는 이하의 주파수의 전과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시 제1호 또는 제2호의 무선절비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의 무선절비 4. 조단과 방송국의 무선절비 5. 174배는에서 585배는까지의 주파수의 전과를 사용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절비 6. 1) 방송국 2) 72배는에서 585배는까지의 주파수의 전과를 사용하여 방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절비 7. 942배는에서 960배는까지의 주파수의 전과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절비 7. 942배는에서 960배는까지의 주파수의 전과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절비 FSE FSW 동산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절비와 1,800배는대의 주파수의 전과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절비 우등은 하는 무선국의 무선절비와 1,800배는대의 주파수의 전과를 사용하는 기원하는데 우파수의 전과를 사용하는 기원하는데 우대전화용 무선절비 PON 1,670배는 이상 1,690배는 이하의 주파수의 전과를 사용하 6배반		6. 1,668.4Mb 이상 1,700Mb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	6MHz
1. 29.7배호 이상 50배호 이하, 138배호 이상 174배호 이하, 216 배호 이상 223배호이하, 335.4배호 이상 470배호 이하, 457.5배호 이상 467.6배호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2. 25.11배호 이상 27.5배호 이하, 29.7배호 이상 50배호 이하, 72배호 이상 76배호 이하, 146배호 이상 174배호 이하(아마추어국,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만 해당한다), 450 배호 이상 467.58배호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한다), 450 배호 이상 467.58배호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 200배호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5. 174배호에서 585배호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방송중계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6. 1) 방송국 2) 72배호에서 585배호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방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7. 942배에서 960배호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F8E F9W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260세호 F8E F9W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260세호 F9E F7W G7W 전과를 사용하는 기연휴대전화용 무선설비 전과를 사용하는 개연휴대전화용 무선설비 전과를 사용하는 개연휴대전화용 무선설비 전화를 사용하는 개연휴대전화용 무선설비 전화를 사용하는 개연휴대전화용 무선설비			3kHz
이상 467.6%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하는 무선국으은 제외한다) 2. 25.11% 이상 27.5% 이하, 29.7% 이상 50% 이하, 72% 이상 76% 이하, 146% 이상 174% 이하(아마추어국, 해상이동업무를하는 무선국만 해당한다), 450% 이상 467.58%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하며 방송중계를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 2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5. 174%에서 585%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송중계를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6. 1) 방송국 2) 72%에서 585%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방송중계를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7. 942%에서 585%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7. 942%에서 960%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7. 942%에서 960%가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공가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마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7. 1.32% 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9 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1.32%			
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2. 25.11배 이상 27.5배 이하, 29.7배 이상 50배 이하, 72배 이상 76배 이하, 146배 이상 174배 이하(아마추어국,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만 해당한다), 450 배 이상 467.58배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한다), 450 배 이상 467.58배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5. 174배에서 585배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6. 1) 방송국 2) 72배에서 585배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방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7. 942배에서 960배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7. 942배에서 960배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800배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7. 942배에서 960배하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7. 942배에서 960배하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1.800배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원하다 기원하다 기원하다 기원하다 기원하다 기원하다 기원하다 기원하다		Mbz 이상 223Mbz이하, 335.4Mbz 이상 470Mbz 이하, 457.5Mbz	
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증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은 제외한다) 2. 25.11배호 이상 27.5배호 이하, 29.7배호 이상 50배호 이하, 72배호 이상 76배호 이하, 146배호 이상 174배호 이하(아마추어국,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만 해당한다), 450배호 이상 467.58배호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한다), 450배호 이상 467.58배호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하며 방송 중계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 200배호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생으로 무선설비 4. 초단과 방송국의 무선설비 5. 174배호에서 585배한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생증계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6. 1) 방송국 2) 72배호에서 585배한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방송증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7. 942배조에서 960배한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F8E F9W 초단과 방송국의 무선설비 F8E F9W 초단과 방송국의 무선설비 F9E F7W G7W 기관 기관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배한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원제한 기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원제한 이상 1,690배호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1,32배호 전파를 사용하는 기원이에는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1,32배호 전파를 사용하는 1,690배호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1,32배호 전파를 사용하는 기원이에는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1,32배호 전파를 사용하는 1,690배호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1,32배호 전파를 1,32배호 1,32		이상 467.6Mb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한다)의 주파수	0.5111
은 제외한다) 2. 25.11배 이상 27.5배 이하, 29.7배 이상 50배 이하, 72배 이상 76배 이하, 146배 이상 174배 이하(아마추 어국,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만 해당한다), 450 배 이상 467.58배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하며 방송 중계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 200배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초단과 방송국의 무선설비 5. 174배에서 585배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송 중계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6. 1) 방송국 2) 72배에서 585배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방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7. 942배에서 960배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7. 942배에서 960배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8만과 망송국의 무선설비 800배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배교대의 주파수 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원자를 사용하는 1,32배 등에 전파를 사용하는 기원자를 사용하는 기원자를 사용하는 기원자를 사용하는 기원자를 사용하는 1,32배 등에 전파를 사용하는 기원자를 사용하는 기원자를 사용하는 1,32배 등에 전파를 사용하는 기원자를 사용하는 기원자를 사용하는 1,32배 등에 전파를 사용하는 1,690배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1,32배 등에 전파를 사용하는 1,32배 등에 전파를 사용하는 기원자를 자용하는 1,32배 등에 전파를 사용하는 1,690배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1,32배 등에 전파를 사용하는 1,690배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1,32배 등에 전파를 1,32배 등에 1,32배		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8.5kHZ
2. 25.11Mk 이상 27.5Mk 이하, 29.7Mk 이상 50Mk 이하, 72Mk 이상 76Mk 이하, 146Mk 이상 174Mk 이하(아마추어국,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만 해당한다), 450 Mk 이상 467.58Mk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 200Mk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5. 174Mk에서 585Mk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6. 1) 방송국 2) 72Mk에서 585Mk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방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7. 942Mk에서 960Mk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7. 942Mk에서 960Mk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7. 942Mk에서 960Mk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7. 942Mk에서 960Mk가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7. 942Mk에서 960Mk가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1.32Mk 등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Mk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Mk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1.32Mk 6Mkk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 172Mbb 이상 76Mbb 이하, 146Mbb 이상 174Mbb 이하(아마추어국,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만 해당한다), 450 Mbb 이상 467.58Mbb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한다), 450 Mbb 이상 467.58Mbb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하며 방송 중계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5. 174Mbb에서 585Mbb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6. 1) 방송국 2) 72Mbc에서 585Mbb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방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7. 942Mbc에서 960Mbb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7. 942Mbc에서 960Mbb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800Mbb 하는 무선설비 무용한 후단과 방송국의 무선설비 우양한 후단과 방송국의 무선설비 우양한 후단과 방송국의 무선설비 우양한 후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Mbb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Mbb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원휴대전화용 무선설비 1.32Mbb 6Mbb 이상 1,670Mbb 이상 1,690Mbb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Mbb 6Mbb 1.670Mbb 이상 1,690Mbb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Mbb 6Mbb 1.670Mbb 이상 1,690Mbb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Mbb 6Mbb 1.670Mbb 이상 1,690Mbb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Mbb 6Mbb 1.670Mbb 이상 1,690Mbb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Mbb 6Mbb 1.670Mbb 이상 1,690Mbb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Mbb 1.670Mbb 이상 1,690Mbb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Mbb 1.680mbb 1.450mbb		은 제외한다)	
이국,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만 해당한다), 450 16klz 16klz 16klz 16klz 16klz 16klz 16klz 17 16klz 16klz 16klz 17 16klz 17 17 17 17 17 17 17 1		2. 25.11째 이상 27.5째 이하, 29.7째 이상 50째 이하,	
### 이상 467.58Mb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하며 방송 중계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 200mb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5. 174Mb에서 585Mb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6. 1) 방송국 2) 72Mb에서 585Mb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방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7. 942Mb에서 960Mb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7. 942Mb에서 960Mb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F8E F9W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F8E F9W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800Mb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Mb대의 주파수의 전화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 기의로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Mb대의 주파수의 전화를 사용하는 기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P0N 1,670Mb 이상 1,690Mb 이하의 주파수의 전화를 사용하		72Mbz 이상 76Mbz 이하, 146Mbz 이상 174Mbz 이하(아마추	
F3E		어국,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만 해당한다), 450	1.ClJIa
중3E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 200배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5. 174배z에서 585배z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6. 1) 방송국 2) 72배z에서 585배z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보방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7. 942배z에서 960배z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8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8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8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8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8 호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9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배z대의 주파수 의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1,670배z 이상 1,690배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Mbz 이상 467.58Mbz 이하(선상통신국만 해당하며 방송	10KHZ
3. 200째로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5. 174째로에서 585째로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6. 1) 방송국 2) 72째로에서 585째로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200세로 방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7. 942째로에서 960째로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무선절비 무선설비 등 보는 무선절비 260세로 무선설비 주의 무선설비 260세로 무선설비 260세로 무선설비 기용 보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60세로 무선절비 기용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째로대의 주파수 등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째로대의 주파수 의 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1,670째로 이상 1,690째로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째로 6세로 250세로 1,670째로 이상 1,690째로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세로 250세로 250	F3E	중계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	
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의 무선설비40klb선국의 무선설비180klb5. 174㎞에서 585㎞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100klb6. 1) 방송국200klb2) 72㎞에서 585㎞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방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200klb7. 942㎞에서 960㎞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400klbF8E동안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F9E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260klbF7W G7W800㎞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 등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1.32㎞PON1,670㎞이상 1,690㎞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6㎞6㎞	G3E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선국의 무선설비 4.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5. 174배에서 585배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6. 1) 방송국 2) 72배값에서 585배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200klb 방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7. 942배값에서 960배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7. 942배값에서 960배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F8E F9W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F9E 800배값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업무선전화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배값대의 주파수 의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1,670배값 이상 1,690배값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3. 200Mb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4.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5. 174배k에서 585배k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6. 1) 방송국 2) 72배k에서 585배k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보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7. 942배k에서 960배k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무	40kHz
5. 174Mb에서 585Mb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			180kHz
6. 1) 방송국 2) 72Mk에서 585Mk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200kkz 방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7. 942Mk에서 960Mk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400klz F8E F9W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F9E 260klz F7W G7W 800Mk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Mk대의 주파수의 1.32Mk 의 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1,670Mkz 이상 1,690Mk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Mkz			100kHz
2) 72Mb에서 585Mb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200kbb 방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7. 942Mb에서 960Mb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F8E F9W			
방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7. 942Mb에서 960Mb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F8E F9W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00011
7. 942Mb에서 960Mb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F8E F9W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F9E F7W G7W 800Mb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Mb대의 주파수 의 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P0N 1,670Mb 이상 1,690Mb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Mbb			∠OOKHZ
선국의 무선설비400khzF8E F9W F9E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 260khzF7W 			
F8E F9W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260klb F9E 800Mb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 동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Mb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1.32Mbb P0N 1,670Mbb 이상 1,690Mbb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Mbb			400kHz
F9E F7W G7W 800Mb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Mb대의 주파수 의 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P0N 1,670Mb 이상 1,690Mb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Mbb	F8E		
F9E F7W G7W 800Mb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Mb대의 주파수 의 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P0N 1,670Mb 이상 1,690Mb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Mbb	F9W	·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260kHz
F7W	F9E		
G7W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吨대의 주파수 의 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1.32吨 PON 1,670吨 이상 1,690吨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세束	E7337	800Mb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	
의 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PON 1,670배z 이상 1,690배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MHz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kmk대의 주파수	1.32Mz
6MHz	G/W		
K2A 는 기상원조국의 무선설비	PON	1,670吨 이상 1,690吨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6MHz
(주)		는 기상원조국의 무선설비	OME

(주)

1) "스테레오포닉 방송"이란 청취자에게 음성이나 음향의 입체감을 주기 위하여 1개의 방송국에서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를 1개의 주파수의 전파로 동시에 전송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 경우 "좌측(우측) 신호"란 청취자의 좌측(우측)에 주세력을 갖는 음성신호를 전송하도록 배치한 단일 또는 조합 마이크로폰의 전기적 출력을 말한다.

■ 무선설비규칙 [별표 3]

협대역·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제7조 관련)

1. 경계기준

주파수 범위	협대역		광대역	
구파구 입기	기준치	경계기준	기준치	경계기준
7. 9kHz $< f_c \le 150$ kHz	250Hz	625Hz	10kHz	$1.5 \mathrm{B_N}$ $+ 10 \mathrm{kHz}$
나. 150년z $<$ $f_c \le 30$ Mz	4kHz	10kHz	100kHz	$1.5\mathrm{B_N}$ + $100\mathrm{kHz}$
다. 30배z $<$ f_c \le 1대z	25kHz	62.5kHz	10MHz	$1.5\mathrm{B_N}$ + $10\mathrm{Mz}$
라. 1대z < f_c \leq 3대z	100kHz	250kHz	50MHz	$1.5\mathrm{B_N}$ + $50\mathrm{Mz}$
$_{\text{P}}$. 3GHz $<$ f_{c} \leq 10GHz	100kHz	250kHz	100MHz	$1.5\mathrm{B_N}$ + $100\mathrm{MHz}$
바. 10대z < f _c \leq 15대z	300kHz	750kHz	250Mb	$1.5\mathrm{B_N}$ + $250\mathrm{MHz}$
사. 15대z $<$ f_c \leq 26대z	500kHz	1.25MHz	500MHz	1.5B _N +500Mb
아. 26대z < f _c	1 MHz	2.5MHz	500MHz	1.5B _N +500Mb

2. 특정업무에 대한 협대역 경계기준

업 무 명	주파수 범위		현대	개역
H T 78			기준치	경계기준
14세 초과		14版 초과 1.5吨 이하		50kHz
고정업무	1.5배 초과	P _T ≤ 50와트	30kHz	75kHz
	30吨 이하	P _T > 50와트	80kHz	200kHz

3. 특정업무에 대한 광대역 경계기준

업 무 명	주파수 범위	광대역	
日子で	- 구파구 함키 -	기준치	경계기준
가. 고정업무	14ktk 초과 150ktk 이하	20kHz	$1.5 \mathrm{B_N}$ + $20 \mathrm{kHz}$
나. 고정위성업무	3.40版 초과 4.20版 이하	250MHz	1.5B _N +250Mb
다. 고정위성업무	5.725대 초과 6.725대 이하	500MHz	1.5B _N +500Mb
라. 고정위성업무	7.25대z 초과 7.75대z 이하 7.9대z 초과 8.4대z 이하	250MHz	$1.5\mathrm{B_N}$ + $250\mathrm{MHz}$
마. 고정위성업무	10.7대 초과 12.75대 이하	500MHz	$1.5B_{N}$ +500MHz

바. 위성방송업무	11.7Gkz 초과 12.75Gkz 이하	500MHz	$1.5 B_{ m N} + 500 Mz$
사. 고정위성업무	12.75號 초과 13.25대 이하	500MHz	$1.5 B_{ m N} + 500 { m Mz}$
아. 고정위성업무	13.75대 초과 14.8대 이하	500MHz	$1.5 B_{ m N} + 500 Mz$

비고

- 1. "협대역 시스템"이란 위 표에 따른 협대역 기준치보다 작은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 2. "광대역 시스템"이란 위 표에 따른 광대역 기준치보다 큰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 3. f_c 는 발사의 중심주파수, B_N 은 필요주파수대역폭, P_T 는 안테나 공급전력을 말한다.
- 4. 시스템의 지정주파수 대역이 두 개의 주파수 범위에 걸쳐 있는 경우 높은 주파수 범위에 해당하는 경계기준을 적용한다.
- 5. 다중반송파 위성시스템 및 1차 레이다에 대한 대역외영역과 스퓨리어스 영역의 경계기준은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 SM.1541의 최신 버전에 따른다.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제8조제1항 본문 관련)

구 분	업무 또는 무선설비	안테나공급전력에 대한 감쇠값(데시벨)
1	우주업무	43+10log(PY) 또는 60dBc 중 덜 엄격한 값
2	무선측위업무	43+10log(PX) 또는 60dB 중 덜 엄격한 값
3	텔레비전방송업무	46+10log(PY) 또는 60dBc 중 덜 엄격한 값 이고, VHF 무선국은 평균전력(PY) 1㎜를 U HF 무선국은 평균전력(PY) 12㎜를 각각 초 과하지 않을 것
4	초단파방송업무	46+10log(PY) 또는 70dBc 중 덜 엄격한 값이 고, 평균전력(PY) 1㎜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중파(MF)/단파(HF) 방송업무	50dBc이고, 평균전력(PY)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6	단측파대 이동국	첨두포락선전력(PX)보다 43dB 낮을 것
7	30Mb 대역 미만의 아마추어 업무 (단측파대 통신방식을 포함한다)	43+10log(PX) 또는 50dB 중 덜 엄격한 값
8	30Mb 대역 미만의 업무 (우주업무, 무선측위업무, 방송 업무, 단측파대 이동국, 아마 추어 업무는 제외한다)	43+10log(X) 또는 60dBc 중 덜 엄격한 값. 이 경우 단측파대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X를 PX로, 그 외의 변조방식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X를 PY로 한다.
9	특정소출력용 무선기기	56+10log(PY) 또는 40dBc 중 덜 엄격한 값
10	비상 송신설비	제한 없음
11	그 밖의 업무 및 무선설비	43+10log(PY) 또는 70dBc 중 덜 엄격한 값

비고

- 1.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 허용치 측정방법은 국제전기통신연합권고 SM.329의 최신 버전에 따른다. 다만, 레이다의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 M.1177의 최신 버전에 따른다.
- 2.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 측정기준대역폭은 주파수 9kbc~150kbc에서 1kbc로, 150kbc에서 10kbc로, 30Mbc ~ 16bc에서 100kbc로, 16bc 이상에서 1Mbc로 한다. 다만, 우주업무는 주파수와 상관없이 4kbc로 한다.
- 3. 기호 dBc는 무변조 반송파 전력을 기준으로 한 dB를 말한다. 다만, 반송파가 없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전력(PY)을 기준으로 한 dB를 말한다.
- 4. 평균전력(PY) 및 첨두포락선전력(PX)의 단위는 와트로 한다.
- 5. 아마추어업무에 사용되는 지구국은 30Mb 대역 미만의 아마추어 업무의 기준을 적용하고, 지구로부터 2×106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우주업무를 하는 우주

국은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6. 혼신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표에 규정된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7. "특정소출력용 무선기기"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른 무선기기를 말한다.
- 8. "비상송신설비"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비상위치지시용 송신기, 개인위 치지시용 표지설비, 수색구조용 트랜스폰더(질의응답장치), 생존정의 송신설비, 비상 시 사용하는 육상, 항공, 해상 업무용 송신설비를 말한다.
- 9. 대역외영역과 스퓨리어스 영역의 경계기준은 필요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 부터 필요주파수대역폭의 250퍼센트만큼 떨어진 주파수로 한다. 다만, 협대역· 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경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전파형식별 안테나공급전력의 표시와 환산비(제9조제1항 본문 관련)

1. 전파형식별 안테나공급전력의 표시

구분	전파형식	전력의 표시
	A1A	
	A1B	
	A1D	
	A2A	
	A3C(전반송파 ¹⁾ 를 단속하는 것만 해당한	
	다)	
	A8W(전반송파를 단속하는 것만 해당한다)	
	A9W(전반송파를 단속하는 것만 해당한다)	
	B7W	
	B8C	
	B8E	
	B9B	
	B9W	
	C3F(방송국 설비만 해당한다)	
	C9F	
	J2A	
가.	J2B	첨두포락선전력(PX)
	J3C	
	J3E	
	J8E	
	K1A	
	K2A	
	K3E	
	L1D	
	L2A	
	L3E	
	M2A	
	M3D	
	M3E	
	M7E	
	PON	
	Q0N	
	R3C	

	R3E	
	R7B	
	V3E	
나.	A3E(방송국 설비만 해당한다)	반송파전력(PZ)
다.	그 밖의 전파형식	평균전력(PY)(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

2. 전파형식별 안테나공급전력의 환산비

		환 산 비			
전 파 형 식	변 조 특 성	반송파 전 력 (PZ)	평 균 전 력 (PY)	첨 두 포락선 전 력 (PX)	비 고
A1A			0.5	1	
A1B			0.5	1	
A2A A2B	가. 변조용 가청주파수의 전건운용	1	1.25	4	
	나. 변조파의 전건운용	1	0.75	4	
A3E		1	1	4	
R3E			0.14	1	2)
B8E			0.075	1	3)
J3E			0.16	1	2)
A3C	가. 주반송파의 단속 나. 기타	1	0.5 1	1 4	
R3C	7. / 14		0.14	1	
J3C			0.14	1	
C3F			1	1.68	방송국만
C9F					해당한다 ⁴⁾
C2W C7W			1	4	방송국만 해당한다
R7B			0.14	1	
R7A			0.075	1	
P0N			1	1/d	5)
K1A			0.5	1/d	
K2A K2B	가. 변조용 가청주파수의 전건운용		1.25	4/d	
IXZD	나. 변조파의 전건운용		0.75	4/d	
L2A	가. 변조용 가청주파수의		1	1/da	5)
L2B	전건운용 나. 변조파의 전건운용		0.5	1/da	

M2A	가. 변조용 가청주파수의	1	1/da	
	전건운용			
M2B	나. 변조파의 전건운용	0.6	1/da	
КЗЕ		1	4/da	
L3E		1	1/da	
МЗЕ		1	1/da	

(주)

- 1) "전반송파"란 양측파대(兩側波帶) 수신기에 의하여 수신이 가능하도록 반송 파를 일정한 레벨로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 2) 저감반송파 또는 억압반송파를 이용하는 단일통신로 송신장치의 첨두포락선 전력(PX)은 하나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송신전력의 포화레벨로 변조한 경우의 평균전력(PY)으로 한다. 이 경우 "저감반송파"란 수신측에서 국부주파수의 제어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일정 레벨까지 반송파를 저감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하고, "억압반송파"란 수신측에서 복조(復調)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반송파를 억압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 3) 저감반송파를 이용하는 송신장치 또는 다중 통신로 송신장치의 첨두포락선 전력(PX)은 임의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변조한 평균전력(PY)의 4배로 한다. 이 경우 동일 통신로에 위의 변조주파수와 같은 강도로서 주파수가 다른 임의의 변조주파수를 가하였을 때에는 송신장치의 고조파 출력에서 제3차 혼 변조 신호가 단일변조주파수만을 가하였을 때보다 25dB 내려간 것으로 한다.
- 4) 방송용 송신장치에서 페데스탈(시험용 영상신호)에 해당하는 영상을 보냈을 때의 평균전력(PY)을 1로 한다.
- 5) 표 중 d는 충격계수(펄스폭과 펄스주기와 비를 말한다)를, da는 평균 충격 계수를 표시한다.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제9조제1항 본문 관련)

	허용편차		
송신설비	상한	하한	
	퍼센트	퍼센트	
1. 방송국(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 및	5	10	
위성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의 송신설비		10	
2.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설비	10	20	
3.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의 송신설비	5	5	
4. 해안국, 항공국 또는 선박을 위한 무선표지국의 송신설비로서 25.11Mb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5. 선박국의 송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405kbk부터 535kbk 이하의 주 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10	20	
나.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1,605kbk부터 3,900kbk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6. 다음 각 목의 송신설비			
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나. 생존정의 송신설비	50	20	
다. 항공기용 구명무선설비	50	20	
라. 초단파대 양방향 무선전화			
7. 다음 각 목의 송신설비			
가. 아마추어국의 송신설비			
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00		
다. 위성방송보조국의 송신설비	20	_	
라.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마.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국의 송신설비			
바. 영 제9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			
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8. 그 밖의 송신설비	20	50	